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21.1.17. 기준으로 재지정하여 취약지역 검진대상자의 불편을 경감하여 주는 한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 연장 및 재지정(안 부칙 제30 256호 제3조 제1항, 제3항 신설)

- 1)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불편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영 제97조제2항)의 유효기간(‘21.1.17)이 도래함에도
- 2) 해당 지역의 경우 신규 특검기관 설립 또는 출장검진 활성화를 즉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취약지역 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자의 원거리 검진으로 인한 부담 경감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
- 3) 이에, 제97조제2항 일몰규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일자(‘21.1.17.) 기준으로 지정해제 및 재지정하도록 규정

나.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단서조항 수정·보완(안 별표30)

- 1)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에 관한 규정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2) 의사 1명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로자수를 명확히 규정
하여 법 집행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13. ~ 1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0 제1호가목 단서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로, “1만명당”을 “1만명마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1년 1월 17일”을 “2023년 1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97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동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8일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기관이 2021년 1월 17일까지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다시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유효기간) ① 제97조제2항은 <u>2021년 1월 17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② (생략) <u><신설></u>	제3조(유효기간) ① ----- -- <u>2023년 1월 31일</u>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u>2021년 1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97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동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8일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기관이 2021년 1월 17일까지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다시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690